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

상품요약서

※ 모바일방카채널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상품명을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e)'로 합니다.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은 재해사망, 고도장해 및 재해수술 등을 보장하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최대 110 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Q :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무엇인가요?

A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상품” 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Q :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의 “일반형”이란 무엇인가요?

A : “일반형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산출한 상품입니다.

Q :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자가 이 계약을 연금으로 전환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전환시점에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계약을 전환해 드립니다. 연금전환시점의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최초에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연금전환특약과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와 적용기초율[연금사망률, 계약관리비용, 전환당시 산출 기준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II.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보장성보험
- 개인형

명칭	세목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유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00세 만기	5/7/10/15/20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월납/ 6개월납/ 연납
		5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7년납	20세 ~ 73세	20세 ~ 75세	
		10년납	20세 ~ 71세	20세 ~ 75세	
		15년납	20세 ~ 68세	20세 ~ 75세	
일반형	110세 만기	20년납	20세 ~ 65세	20세 ~ 75세	
		100세 만기	3/5/7/10/15/20년납	20세 ~ 75세	
		3년납	20세 ~ 73세	20세 ~ 75세	
		5년납	20세 ~ 71세	20세 ~ 75세	
		7년납	20세 ~ 70세	20세 ~ 75세	
		10년납	20세 ~ 68세	20세 ~ 75세	
15년납	20세 ~ 65세	20세 ~ 75세			
20년납	20세 ~ 62세	20세 ~ 75세			

3.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 최고 5,000만원

※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내용, 가입나이 등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III.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가. 주계약(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억원
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 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3 억원
재해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40 만원
상과염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과염(테니스엘보·골프엘보)'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20 만원
특정외상성뇌손상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 회에 한함)	40 만원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 회에 한함)	200 만원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재해수술급여금은 1 회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시 특정외상성뇌손상 진단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의상성뇌출혈 이외의 원인으로 이미 특정의상성뇌손상 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진단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특약(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 연금	종신 연금 (개인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상속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 차년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1년전으로 할인한 금액에 대한 1년간의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 2 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1 차년도 연금액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원금으로 매 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매 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공시이율을 적용) *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연금	확정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5년, 10년, 15년, 20년

(주)

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동안 연금지급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9.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11.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V.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3.25%, 10년 초과 연복리 2.25%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생명보험 참조순보험요율2의 80%이상 질병장애발생률		생명보험 참조순보험요율2의 80%이상 재해장애발생률		생명보험 참조순보험요율2의 재해사망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0.000004	0.000003	0.000016	0.000005	0.000097	0.000042
40세	0.000016	0.000004	0.000014	0.000003	0.000121	0.000033
60세	0.000291	0.000100	0.000074	0.000021	0.000332	0.000084

3. 적용해지율

Q :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에 적용한 해지율은 0%~15.5%이며, 일반형에는 적용해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V.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VI.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①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40세,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3,255,300	0	0.00%	3,486,600	0	0.00%
6개월	6,510,600	0	0.00%	6,973,200	0	0.00%
9개월	9,765,900	0	0.00%	10,459,800	0	0.00%
1년	13,021,200	1,374,493	10.56%	13,946,400	2,748,986	19.71%
2년	26,042,400	8,775,686	33.70%	27,892,800	17,551,371	62.92%
3년	39,063,600	16,389,129	41.95%	41,839,200	32,778,257	78.34%
4년	52,084,800	24,221,421	46.50%	55,785,600	48,442,843	86.84%
5년	65,106,000	32,279,914	49.58%	69,732,000	64,559,829	92.58%
10년	130,212,000	73,695,000	56.60%	139,464,000	147,390,000	105.68%
15년	195,318,000	115,033,650	58.90%	209,196,000	230,067,300	109.98%
19년	247,402,800	151,405,800	61.20%	264,981,600	302,811,600	114.28%
20년	260,424,000	321,958,200	123.63%	278,928,000	321,958,200	115.43%
30년	260,424,000	390,876,300	150.09%	278,928,000	390,876,300	140.14%
40년	260,424,000	456,838,200	175.42%	278,928,000	456,838,200	163.78%
50년	260,424,000	419,370,000	161.03%	278,928,000	419,370,000	150.35%
60년	260,424,000	0	0.00%	278,928,000	0	0.00%

②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40세,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507,500	0	0.00%	1,596,600	0	0.00%
6개월	3,015,000	0	0.00%	3,193,200	0	0.00%
9개월	4,522,500	0	0.00%	4,789,800	0	0.00%
1년	6,030,000	0	0.00%	6,386,400	0	0.00%
2년	12,060,000	3,385,671	28.07%	12,772,800	6,771,343	53.01%
3년	18,090,000	6,933,107	38.33%	19,159,200	13,866,214	72.37%
4년	24,120,000	10,579,843	43.86%	25,545,600	21,159,686	82.83%
5년	30,150,000	14,327,979	47.52%	31,932,000	28,655,957	89.74%
10년	60,300,000	33,241,650	55.13%	63,864,000	66,483,300	104.10%
15년	90,450,000	51,924,450	57.41%	95,796,000	103,848,900	108.41%
19년	114,570,000	68,354,400	59.66%	121,341,600	136,708,800	112.66%
20년	120,600,000	145,351,800	120.52%	127,728,000	145,351,800	113.80%
30년	120,600,000	173,432,400	143.81%	127,728,000	173,432,400	135.78%
40년	120,600,000	181,506,300	150.50%	127,728,000	181,506,300	142.10%
50년	120,600,000	159,783,600	132.49%	127,728,000	159,783,600	125.10%
60년	120,600,000	0	0.00%	127,728,000	0	0.00%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해약환급금은 당해 보험년도 말 기준으로 예시된 금액입니다.
3. 경과년도와 보험료납입기간(년수)이 동일한 시점(예를 들어 주계약 납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경과년도 20년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직후 연계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예시됩니다. 따라서 연계계약해당일 도래 전 해지시 예시된 해약환급금 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Ⅶ. 보험가격지수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40세, 월납]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무)Top3 CEO 안심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60	20	95.2%	97.9%	3,000
(무)Top3 CEO 안심보험 (일반형)	60	20	88.9%	90.4%	3,000